

서울고등법원 2024년 5월 선고 중요 판결 · 결정¹⁾

민 사

2023나2038760 상환금 청구의 소

[제16민사부 2024. 5. 9.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 및 피고 최대주주인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는 피고 측 의무위반 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 조항이 있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는 피고 측에 기업 상장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었음.
- 원고는 피고의 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금 및 이자 지급을, 예비적으로 일반상환에 따른 상환금 및 이자 지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상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기상환청구권 인정 여부(소극)
- 조기상환청구에 일반상환청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상장을 위해서는 매출 등 경영성과 관련 요건의 충족이 필요한데,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장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소될 수 있는 사항들을 먼저 이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적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여 연복리 19%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이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의도에도 반하므로, 상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기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청구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일반상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과 일반상환청구권은 청구 시기, 사유, 1주당 상환가액 및 상환하여야 할 주식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최초 조기상환청구를 요구하던 때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청구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기상환청구에 일반상환청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 항소 기각, 피고 항소 일부 인용]

1) 일부 이전 판결 · 결정을 포함하고, 민사, 가사, 행정, 형사의 사건분류 가나다순.

[제23민사부 2023. 11.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은 2004. 5. 2. 사망,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 피고 있음.
- 망인은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 또는 유증 하였음.

□ 쟁점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소극)

□ 판단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참조).
- ① 망인의 사망 후 매해 명절 때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였고, 2011. 11.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망인의 증여 등을 알게 된 이후부터 매년 설날 및 추석에 피고에게 각자의 몫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 있음, ② 원고들이 망인의 증여 등을 알고 피고에게 각자의 몫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부터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다가 2011. 11.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을 확인하면서 망인의 증여 등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후 첫 명절인 2012. 1. 23., 즉 유류분 침해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행사하는 권리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아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및 금전채권인바,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에 규정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제4민사부 2024. 5.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음.
- 원고는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

☐ 쟁점

- 피고 공동소송참가신청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주문 기재 방법

☐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변론종결 전에 위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소송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인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음.
-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한 공동소송참가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하였음. [원고패]

[제9민사부 2024. 5.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 재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전력 공사가 기금을 출연하고 피고 재단이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전 햇살 행복 발전설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위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임.
- 2018. 1.경부터 피고 재단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이행준수 점검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 甲은, 2022년경 원고들에게, ‘감사를 피하려면 일자리 창출 실적이 필요하고 그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와 임금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 허위 근로계약서는 내가 만들어 보내줄테니 날인해 주고, 1년 치 임금을 乙(甲의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로써 일자리 실적 보고를 하고 2주 뒤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甲은 이러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 원고들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피고 재단에 대하여 甲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고, 1심이 원고들의 甲에 대한 청구는 인용,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자 원고들이 항소함.

□ 쟁점

- 사용자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기망행위) 자체에서 그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이에 의구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원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사업 내용상 인건비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익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원고들로서는 그를 감수해야 함.
- 甲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것처럼 甲이 원고들에게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 하고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면 그 지시에 따른 원고들은 허위의 근로계약임을 알면서도 이에 협조하여 그와 같은 외관이 작출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업수행의 내용이 아님이 명백함.
- 甲의 기망행위에서 그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의구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甲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불법에 협조한 것은 원고들의 중과실에 해당함 [항소기각(원고패)]

[제13민사부 2024. 5. 1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으로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 종료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 쟁점

-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소극)
- 임차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의무 유무(소극)

□ 판단

- 원고의 합의해지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던 피고로서는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합의해지에 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고와 원상복구 공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 사이에 원상복구 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합의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원상복구 공사 완료를 이유로 보증금 정산 및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증금 반환 범위에 관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보증금 반환 범위에 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원상복구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를 진행하고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원상복구 공사에 관하여 협의하고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의 상태인 업무시설(사무소)로 회복시킨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무렵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원고일부승)

2024나2004368(본소) 부당이득금, 2024나2004375(반소) 양육비

[제37-3민사부 2024. 5.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선행 이혼소송 1심은 ‘본안사건 확정시까지 임시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양료(자녀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및 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생활비 일체 포함) 1,800만 원을 매월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함.
- 이혼소송 1심에서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금,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 이혼소송 항소심은 자녀 양육비 부분을 ‘2020. 1.부터 800만 원을 매월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가집행을 선고함(2022. 6. 30. 심불기각 확정).
- 원고는 본안판결의 효력이 사전처분에 우선하므로 2020. 1.부터는 이혼소송 항소심이 정한 자녀 양육비 월 800만 원의 지급의무만 있는데, 2020. 2.부터 2022. 6.까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월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피고에게 그 차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쟁점

-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돈 중 이혼소송 항소심이 정한 자녀 양육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급부인지(소극)

□ 판단

- 원고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 ① 이혼소송 1심에서 피고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쌍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도, 위 1심 판결 선고 무렵에 사전처분결정 중 피고에 대한 부양료 부분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② 사전처분결정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월 1,8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이혼소송은 2022. 6. 30. 확정됨.
 - ③ 이혼소송 1심 및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하면서 사전처분결정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 ④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금원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음.
 - ⑤ 사전처분결정은 피고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액을 정하였고, 이혼소송 항소심은 자녀 양육비 액수만을 정하고 있어, 원고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자녀 양육비가 본안판결이 정한 자녀 양육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음.

행 정

2023누396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8-2행정부 2024. 5. 17.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공급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물건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중간에 가공거래로서 이 사건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여 여러 회사를 이른바 끼워넣기한 다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터 잡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 피고(관할세무서장)는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재산정한 후, 2019.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09년 1기~2017년 2기)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 판단

- ① 본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거래 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기는 하나, 원고에게 가공의 매출세액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그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세와 동일하게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인바, 2019. 7. 1.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1기 내지 2013년 2기분의 경우 2009. 7. 26. 내지 2014. 1. 26.부터 기산하여 각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본세 및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는, 납세자인 원고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2019. 7. 1.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1기의 경우 2009. 7. 26.부터 기산하여 10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 기간 동안의 해당 가산세 부분은 모두 적법함 (원고일부승)

2024루1184 집행정지

[제7행정부 2024. 5. 16.자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의대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함.

☐ 쟁점

- 처분성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한정적극)
- 집행정지의 허용 여부(소극)

☐ 판단

- 행정소송은 문제된 처분의 정책적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해당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임.
- 이 사건은 본안소송이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사건으로서 그 쟁점은 집행정지 요건(적법 요건,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의 상세한 심리·판단은 본안소송에 맡겨야 함.
- 집행정지의 적법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의과대학의 정원은 다른 대학의 정원과 달리 대학의 총장이 아닌 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은 모두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전체적으로 그 처분성이 소명됨.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 역시 그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위하여 누군가는 이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비록 신청인들이 현재 또는 장래의 의사로서 가지는 지위에 기초하여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대 교육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여러 이해관계인들 중 의대생들에게는 그 원고적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의대생들의 신청은 일응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대교육에 발생할 수 있는 곤란을 고려할 때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수험생들의 신청은 부적법 각하,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 [항고기각]

형 사

2024노857 폭행

[제8형사부 2024. 5.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전투비행단 내 군관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피해자가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군관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다투고 있음.

☐ 쟁점

- 군관사가 군형법 제60조의6에 의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군형법 제60조의6에 의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됨.
 - ①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상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반의사불벌 조항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군형법 제60조의6에서 규정한 군사기지를 군사목적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한정된다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님.
 - ②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군사기지에 대하여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등’과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음.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자의 필요성이 크고 부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이 사건 군관사는 단순한 사생활영역이나 군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임. 더구나 이 사건 군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비행단의 율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초병에 의하여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며,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군부대의 주둔지 내지 위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하고, 장교 등이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을 하지 않고 영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음 [항소기각(유죄판결)]

[제20형사부 2024. 5. 8.자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함.
- 위 사건은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다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에 따라 재정합의결정으로 형사합의 재판부에 재배당됨(이하 ‘대상사건’이라 함).
-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으로 치매로 인한 경도의 인식장애를 앓고 있었음.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피고인에게 정신 이상의 의심이 있는 경우’를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대상사건의 심리에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고의 등 법률적 쟁점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음.

□ 쟁점

- 치매로 인한 경도의 인식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의부 관할사건이 아니지만 재정합의결정으로 합의부에 재배당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합의부 관할사건이 아니지만, 재정합의결정으로 합의부에 재배당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함.
- 피고인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변호인도 선임되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경도의 인식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결정 취소 [항고인용]